

# 소 장

####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입양신고(○○구청장 20○○. ○. ○.접수)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# 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들은 누군가가 슬며시 원고들의 집앞 대문에 놓아두고 간 기아인 피고를 가엾이 여겨 마침 자녀가 없는 터라 양육하기로 협의하고 현재까지 친자녀처럼 양육을 하여 왔습니다.
- 2. 원고들은 비록 슬하에 친자녀가 없습니다만 재산은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서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못지 않게 여생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처지였으므로 입양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.
- 3. 그런데, 업무상 직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어 20〇〇. 〇. 〇.경 〇〇구청에서 가 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을 우연히 살펴보는 중에 뜻밖에도 피고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- 4. 원고들은 양자를 입양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들에게 그다지 양육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터에 피고를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입양신고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.
- 5. 그 후로 위 입양사실을 알아보았더니 원고들이 연로한데다가 친자녀가 없는 관계로 피고가 차후 상속에 있어서 상속받기 위하여 몰래 입양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1. 갑 제1호증입양관계증명서1. 갑 제2호증피고의 자술서1. 갑 제3호증증인확인서

#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1통1. 납부서1통



## 20ㅇㅇ년 ㅇ월 ㅇ일

# ○ ○ 가 정 법 원 귀중
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30, 31조 미법 제883조
제기권자	· 당사자 · 법정대리인 · 4촌 이내의 친족(가사소송법 제31, 23조)		
상 대 방	·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· 제3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,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. ·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. (가사소송법 제31, 24조)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 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 용	・인지액 : 20,000원(□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당사자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2회분		
입양무효 사 유	1. 당사자 간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 2.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3.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로서 가정법원 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4.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었던 때 5.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		

## ※ 제 출 법 원

- 1.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
- 2.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